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19 - 11호

「상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 66조의2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9년 5월 30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「상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-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·축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 구축 도모
-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,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,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정목적, 정의,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3조)
- 나.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·시행, 공공급식 지원, 급식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~ 제6조)
- 다.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,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, 관계기관·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제9조)
- 라.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, 위원회 구성, 위원회의 임기, 위원의 제척·기

파·회피, 위원장 직무, 회의, 간사,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 ~ 제17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·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상주시의회의장 [참조 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,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(전화 : 054-537-7841, FAX : 054-535-9854, 상주시의회 홈페이지 www.sangjucouncil.go.kr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상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 (단체의 경우 단체명, 대표자)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의견 내용	비고